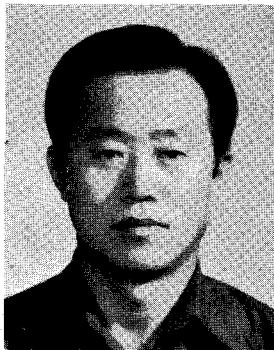


배합사료의 성분 한도량 자유등록시대를 맞이하면서



이현범

(퓨리나 코리아 품질관리부)

농수산부 고시 제 82-71(82. 12. 20)로 개정고시한 사료의 공정규격이 금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중 양축가들이 그동안 바라던 배합사료 전 품목에 대하여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자체성분을 결정 등록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료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는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제조업체는 물론 양축가를 포함한 모두의 노력으로 축산업을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외 소량광물로 이용하던 Mg, Na, Cl, K, S 5종을 단미사료의 필수 광물질원으로 지정하였는데 양축가나 사료업체들이 원하는 만큼 만족한 결과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이 있는 것으로 업계는 받아드리며 가까운 시일 내에 후속조치가 계속 있을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 본다. 그토록 바라던 일들이 서서히 해결되어 감에 따라 축산업계의 밝은 앞날을 그려본다. (편집자註)

사료의 공정규격 개정에 대하여

1983년의 새아침을 맞이해 지난 해에는 참으로 어려운 해를 잘도 넘겼구나 하는 생각이 앞서면서 금년에는 우리 축산업계 전체가 이 나라의 기간산업으로서 그 밀바탕을 단단히 굳히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빌었었는데, 이번 우리 업계에 새해 아침에 오는 첫눈처럼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그것은 사료의 공정규격 개정에 관한 농수산부의 고시인데, 곁으로 보기에는 대단치 않은 내용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축산업계의 자율적인 책임과 창의력의 개발 및 생산성 향상과 품질향상을 위한 전체의 노력을 요구하는 첫 출발점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 있어서 대단히 획기적인 의의가 큰 개정이라 하겠다.

물론 이것이 첫 출발이기 때문이겠지만, 아직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겠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도 있지만 우선 이 개정에 관한 내용소개 및

앞으로 더욱 발전되어 나가야 할 사항을 본인이 느끼는 대로 적어보자 한다.

82년 12월 20일자 농수산부 고시 제82-71호는 사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료의 공정규격을 개정한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83년 1월 20일부터 발효된다.

사료의 공정규격에 관한 가장 최근의 개정은 1982년 2월 1일자 농수산부 고시 제82-5호가 되겠는데 이와 비교하여 어떠한 내용이 변경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료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문제점들이 차후에 다시 다루어져야 할 것인가?

문제의 제기를 아울러 해보고자 한다.

우선 83년 1월 20일부터 시행될 농수산부 고시 82-71호에 담겨져 있는 새로운 변경사항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배합사료에 관한 사항중 변경내용

배합사료 전 품목에 대하여 성분량 한도량에 대하여 자율등록시대의 장이 열리다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한 배합사료의 품목은 31종이며 이들 제품에 대해서 조성분량의 최소량과 최대량을 설정하여 준 바 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1980, 1981 그리고 1982년 수삼차에 걸쳐 성분량한도량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철폐를 실시하여 31개 품목중 23종 배합사료의 성분량한도가 제조업자에 의하여 임의로 결정 등록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머지 8개 품목 즉, 산란초기, 육계전기, 육계후기 1호, 젖먹이 돼지, 육성돈, 착유 2호, 착유 3호, 고깃소후기에 대하여도 성분량 한도량에 대한 자율등록의 길을 열어 명실공히 성분량한도량에 관한한 전품목에 대하여 자율등록시대의 장이 열렸다 하겠다. 이는 한국 배합사료 20여년의 역사를 놓고 볼 때 가장 획기적인 개정이라고 생각되는데 뒤에 그 의의에 대하여는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2. 허가특례에 의한 배합사료에 관한 사항중 변경내용

지금까지의 허가특례로 지정된 품목의 배합사료로는 젖소용 대용우, 양돈용 대용우, 고구마 전분박 발효사료, 옥수수 전분박 발효사료 등의 4종이 있었는데 새로운 개정 고시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2종의 신규품목을 추가시키고 있으며 그외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대용탈지분유	35.0이상	4.5이상	5.0이하	8.0이하
대용유장분말	18.5	3.5	7.0	7.5

다만, 대용탈지분유 및 대용유장분말이 어떠한 이용목적과 어떠한 원료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서술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의 제품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3. 단미사료에 관한 사용중 변경내용

5종의 광물질 보충물이 단미사료로 지정된 것에 큰 의미있어

이미 단미사료로 지정된 어분, 우모분, 육분,

육끌분, 피혁분, 대두박, 골분, 석회석, 인산칼슘, 탈지강, 보릿겨, 밀기울류 등 13종 이외에 새로 필수광물질로서 Mg, Na, Cl, S, K 등의 5종의 광물질 보충물이 소량광물질 원료로서 추가된 것이 특기할 만하다.

탈지강, 소맥피, 맥강 등에 관하여는 수분의 최대 허용치를 새로이 설정하였는데 이는 원료의 저장과 관련하여 품질유지에 기본요소가 되는 수분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아울러 정부배정 부산물에 대해서도 품질관리가 강조되고 있다는데 동감이 간다.

여기에서 몇 종류의 광물질원료가 사료원료로서 새롭게 지정된 것은 이번에 지정된 5가지 이외의 수많은 기타 광물질 원료가 앞으로 사료관리법 테두리에서 논의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정책의 전환점으로 보아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4. 보조사료에 관한 사항중 변경내용

규산염, 요소, 향미제류가 이에 속하는데 별 다른 개정사항은 없다.

5. 이물질 및 이물질의 혼입관계에 관한 사항중 변경내용

토사, 쇠불이, 초사세편 등의 중량증가 목적으로 사용가능성이 있는 이물질 규정에 관한 사항중 배합사료내 토사 한계량은 0.7%에서 1.5%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규산염류와 같은 보조사료가 배합사료에 사용될 경우 사료분석검사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되는데 적절한 개정으로 받아 들여진다. 반면 어분의 토사한계량은 각 등급의 어분에 있어서 1%씩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어분제조중에 있어서 일광전조 등과 같은 좋지 않은 제조과정중 토사의 혼입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용량제로 규정된 왕겨, 짚, 톱밥, 낙화생껍질 및 기타 조선유량이 32%이상인 물질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배합사료 원료로서의 사용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데 새로운 반추동물용 사료의 개발을 위해 이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료제조업자 측



◀ 배합사료에 대한 자율적인 성분등록으로 우리나라 사료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업계는 가까운 시일 내에 후속조치가 계속 있을 것을 기대한다.

면에서 아쉬움을 그대로 안고 또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 사료부문별로 어떠한 개정 내용이 있는가 살펴보았는데 고시 82-71호에 포함되어 있는 개정사항 중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성분량한도의 완전자율화라 하겠다. 이것은 마치 중고등학교의 교복 자율화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 이상의 의식구조 변혁의 출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금번의 개정은 의견상 소폭인듯하나 본질적으로는 커다란 변혁으로 받아들여 지는데 사료행정에 있어서 두고 두고 기억해 두어야 할 이정표가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현재의 농수산부 사료행정에 임하는 부내여러분들의 용단과 혜안에 새삼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이번의 자율화가 하나의 출발의 시점이 되어 사료관리법의 더 이상의 개선은 물론 축산업계 전반에 걸쳐 자율성이 보다 뒷받침되는 여건조성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자율화의 시도가 앞으로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지금의 배합사료 종류의 제한, 단미사료의 성분한도량, 이물질·규제 등의 규정철폐는 보다 자연스럽게 소멸되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제 새삼스럽게 과거의 규제중심 또는 지도 개념 성격을 떤 성분량 제도가 얼마나 합리적이었는가를 논할 필요가 없고 다만 앞으로 효율

적인 사료생산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료관리법에서 경제적인 배합표 작성과 관련된 것 중 검토의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여겨지는 문제점을 들어보기로 한다.

더욱 발전되기 위한 몇가지 제언

1. 배합사료 종류의 다양화를 조장하여야 한다.

현행 법규에 수록된 배합사료의 종류를 보면 양계용 10종, 양돈용 7종, 축우용 10종, 기타 특수용 3종으로 총 31종의 사료가 인정되고 있는데 사실상 가축을 사육하는 양축업자는 각자의 사육여건에 따라 천태만상의 사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구미제국에서는 하나의 사료회사 또는 단위 사료공장이 50~200 가지의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인가 시사해 주는 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일례로 양계 사료인 경우 산란하기까지의 탱을 육성하기 위하여는 어린 병아리, 중병아리, 큰병아리 산란용 사료가 필요한데 이를 사료가 브로일러 종계와 같은 중형종이나 레그흔계통의 소형 산란계에 각각 다른 영양율의 사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다아는 사실이지만 현행 법규에 의하면 한가지의 어린 병아리, 중병아리 또는 종계 사료만이 생산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기타 각종 스트레스 및 수많은 질병과 관련된 특수약품이 처방된 사료를

생각한다면 왜 외국에서 200여종의 사료종류가 유통되는지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2. 단미사료 성분량의 최초 최대량 설정은 비합리적이다

배합사료 성분한도량이 자율화된 이마당에 배합사료의 원료가 되는 단미원료사료의 성분량 규정이 그대로 존속된다는 것은 더욱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다.

배합사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율적인 성분 등록제가 보다 자연스러울 것이며, 차제에 단미원료에 대한 조성분등록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모든 단미원료는 일정한 조성분량만으로 설명될 수 없을 뿐더러, 단미원료를 필요로 하는 사료생산업자가 단미원료의 성분량 설정이 사료업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때 과연 이러한 비효율적인 제도가 누구를 위하여 존속해야 하는 것인지 재검토 되어야할 것이다.

3. 이율질로 지정된 것중 조섬유 공급원인 벗짚, 왕겨 등을 이율질로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다.

축종이나 배합사료 원료조성에 따라서는 상기 조섬유 공급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반추위동물에 있어서는 반추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벗짚, 왕겨, 땅콩씨 껍질, 목화씨 껍질 등의 조섬유함량이 32% 이상인 원료가 새로운 사료의 개발을 위하여 대단히 필요하거나 필수적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초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도 오히려 이와같이 조악한 조섬유 원료가 사양농자가 조사료를 따로 급여하지 않고도 이미 조사료와 농후사료를 동시에 급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완전 배합사료 원료로서 더욱 광범위하게 이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본다면 마땅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축산물의 경제적인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한다면 과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원료의 사용을 막아서는 안될 것이다.

4. 사료공장에서 약품 및 사료첨가제를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현행 약품사용지침은 너무 제한적 요소가 많아서 가축의 생산성과 위생방역상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가축사육환경은 위생방역이란 관점에서 설명이 필요없을 만큼 매우 불량하다 할 수 있으며 실제 농가에서는 약품의 파용 또는 오용이 극심한데도 사료공장이 합리적으로 개입하는 길이 막혀있음은 대단히 비경제적이고 비과학적인 일이라 하겠다.

이상으로 몇가지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어 나열하였지만 이 모두가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판매정책의 기본정신에 근거한다면 모든 것이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행동하고 있음을**

세원의 기본 경영방침

1. 양축가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어 이로 인하여 발전한다.
2. 원재료 공급자, 판매자 그리고 양축 가와 더불어 공존공영을 도모한다.
3. 이익은 사회에의 공헌에 대한 보수로 생각한다.
4. 공정한 경쟁을 행한다.
5. 중지를 모아 전원경영을 행 한다.

세원사료 (주) 천안(2) 8001~5
(782) 4638·4639·5310